



기획재정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2020년 (사회적)협동조합(연합회) 경영공시 추진 안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49조의2, 제96조의2에 따라 일정 규모*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와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.

* '19년도말 기준 조합원수(연합회는 회원조합의 총 조합원수)가 200명 이상이거나, '19년 결산보고서상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
3. 이에 따라, 2020년 경영공시를 추진하오니 기한내 경영공시가 완료 (www.coop.go.kr에 공시자료 등록)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부실공시에 따른 불이익*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, 3월말까지 공시대상인 조합(회계연도가 1.1~12.31인 경우)은 코로나19로 인한 총회지연 등을 감안하여 공시기한을 4월말까지로 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에 따라 경영공시 기한 미준수, 허위·부실자료 공시 등 경영공시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
4. 추가로, 경영공시 가이드라인은 협동조합 홈페이지 (www.coop.go.kr→공지사항)에 게시하였사오니 공시자료 작성 및 홈페이지 등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기획재정부장관

수신자 2020년 경영공시 대상 (사회적)협동조합 이사장 및 (사회적)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귀하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

사무관

협조자

시행

접수

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, 4동 기획재정부(어진동) / <http://www.moef.go.kr>

전화번호 044-215-5934 팩스번호 044-215-8034 / hiba@korea.kr /